



KADA Anti-Doping Guide for Coaches



도핑방지 가이드



지도자용



In partnership with



한국도핑방지위원회
KOREA ANTI-DOPING AGENCY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2006년 11월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도핑방지기구(NADO: National Anti-Doping Organization)입니다.

KADA는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도핑방지교육·홍보, 도핑관리, 조사, 과학연구 및 국제협력 등 다양한 도핑방지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금지약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깨끗한 스포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

스포츠에서 선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 환경 조성, 기술 교육, 컨디션 조절 등을 관리하는 든든한 지원자입니다.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선수지원위원의 일원으로서 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랜 노력을 통해 쌓아온 성적과 명예, 경력이 작은 부주의와 무지로 무너지지 않도록, 선수와 지도자는 항상 도핑방지 관련 권리와 의무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여러분이 훌륭한 지도와 코칭을 통해 선수를 바른길로 이끄는 보호자이자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핑방지규정위반

Anti-Doping Rule Violation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3조 제1~11호에서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위반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호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 존재

제2호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또는 사용 시도

제3호

선수가 시료채취를 회피 또는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료채취의 실패를 야기

제4호

소재지정보 불이행 (12개월 내 소재지정보 제출불이행 및 검사불이행이 합산 3회 발생한 경우)

제5호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도핑관리 과정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행위 시도

제6호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제7호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부정거래하거나 부정거래 시도

제8호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선수에게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투여 또는 투여 시도

제9호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위반을 공모하거나 공모 시도 (협조·조장·원조·교사·음모·은폐등)

제10호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제재 중인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과 연루

제11호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도핑방지규정위반 등과 관련하여 타인의 제보를 제지하거나 그에 대한 보복 또는 위협



만약 지도자가 선수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하거나 선수가 금지약물을 사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등 도핑방지규정위반에 관계된 경우, **지도자 역시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KADA 누리집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3조 참조

도핑검사 Doping Test



KADA에서 시행하는 도핑검사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가 제정한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따라 시행됩니다.

도핑검사의 기준

KADA에서 시행하는 도핑검사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가 제정한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따라 시행됩니다. 모든 검사 절차와 방법은 전 세계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종목과 선수 개인에 따라 필요한 검사항목이 다르므로, 선수는 검사주관기구가 요청 하는 시료(소변 또는 혈액)를 제공해야 합니다.

도핑검사의 대상자

선수라면 누구나 검사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KADA, 국제경기연맹 등 도핑방지기구가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립된 검사배분계획에 따라 정해집니다.

선정방식은 크게 3가지로 순위별, 무작위, 표적으로 나뉩니다.

최근에는 선수생체수첩(ABP: Athlete Biological Passport) 모니터링, 도핑의심제보 등 조사 및 정보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표적검사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핑검사는 사전미통지 원칙

도핑검사는 검사주관기구에서 정한 도핑검사배분계획에 따라, 경기기간 중 또는 경기기간 외에 불시에 진행됩니다.

경기장, 거주지, 훈련장 등 선수가 있는 곳 어디든 도핑검사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경기기간 중 : 선수가 참가 예정인 경기의 전일 오후 11:59 부터, 경기와 관련된 시료채취 과정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기간

지켜주세요! 알아두세요! 선수의 권리와 의무

선수의 권리

- 시료채취요원(도핑검사관, 샤프롱)의 신분을 확인할 권리
- 필요 시, 1명의 선수대리인과 1명의 통역을 동반할 권리
-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핑관리실 도착 연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장애인 또는 미성년 선수의 경우, 절차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시료채취용품의 선택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시료채취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권리

선수의 의무

- 검사대상자 통지시점부터 시료채취 후 도핑관리실을 떠날때까지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의 직접적인 관찰을 받아야 함
- 시료가 제공되는 동안 동성의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에 의해 관찰되며, 통지 후 첫 번째 시료를 제공하여야 함
-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함
- 도핑관리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함
- 시료채취 절차를 준수해야하며 거부 또는 비준수 시,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합당한 사유로 도핑검사관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도핑관리실에 도착하여야 함

'선수대리인'으로서 지도자의 역할

지도자는 도핑검사 절차에서 '선수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KADA · 국제경기연맹 등 도핑방지기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선수대리인이란?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선수가 도핑검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도핑관리실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성인(만 18세 이상)
- 지도자(감독, 코치, 트레이너), 팀닥터, 부모 등
- 선수대리인은 도핑검사서에 도핑검사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는 서명 기입

도핑검사 절차

경기장, 거주지, 훈련장 등
선수가 있는 곳 어디든 도핑검사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01. 검사대상자 통지 및 동반

- a 도핑검사관(DCO: Doping Control Officer) 또는 샤프롱(Chaperone)으로부터 검사대상자로 선정 되었음을 통지받습니다.
- b 선수는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도핑관리실로 이동합니다.

02. 시료제공

소 변

- a 도핑검사관의 안내에 따라 한 개의 시료채취 용기(Vessel)를 선택합니다.
- b 동성의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과 함께 화장실로 이동하여 관찰 하에 90ml 이상의 소변을 용기 안에 제공합니다.



혈 액

- a 선수는 도핑관리실 도착 후 시료 채취 제공 전까지 발을 바닥에 대고 앉은 채 10분간의 휴식시간을 갖습니다.
- b 도핑검사관의 안내에 따라 한 개의 혈액사료키트를 선택합니다.
- c 선수가 키트를 직접 개봉하고, BCO(Blood Collection Officer)가 혈액을 채취합니다.

03. 시료봉인

- a 시료키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봉 흔적이 없는지, 오염이나 파손은 없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 b 확인 후 자신의 소변시료를 키트에 나누어 담고 직접 봉인합니다.

- a 선수는 혈액시료가 담긴 튜브를 보관용기에 넣고 직접 봉인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선수 요청에 따라 도핑검사관 또는 선수대리인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04. 서류작성

- a 검사서 내용에 오류 또는 빈칸이 있는지 확인한 후 최종 서명을 합니다.
- b 도핑검사관으로부터 검사서 선수 사본을 수령하고 도핑관리실을 나갑니다.

도핑관리실 이동

도핑관리실
도착 지연 요청
가능 사항

-사상식 참석	-신분증 가져오기	-대리인 또는 통역인 물색
-후속경기 참가	-연료 인터뷰	-옷 갈아입기
-필요한 의료조치	-훈련 또는 정리운동	-기타 정당한 의학적 상황

도핑검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수는 가능한 빨리 도핑관리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핑관리실 도착 지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시료채취요원(DCO 또는 샤프롱)이 동반하여 직접적인 관찰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선수대리인으로서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는지 등 검사과정에서 선수의 권리가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Prohibited Substances & Methods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에서는 선수가 사용해서는 안되는 약물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목록 국제표준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을 선정·목록화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금지목록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필요 시에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 KADA 누리집에서 「금지목록 국제표준」 국문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지약물의 결정 기준



·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선수의 건강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경우



·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

약물 사용 전, KADA 누리집에서 '금지약물 검색서비스'를 통해 금지 여부를 반드시 검색하세요.

금지약물 검색서비스

Prohibited Substances Search

약물 사용 전, KADA 누리집에서 '금지약물 검색서비스'를 통해 금지 여부를 반드시 검색하세요.



1. KADA 누리집 www.kada.or.kr 접속
2. 누리집에서 「금지약물검색」 메뉴 클릭
3. 직종 선택
4. 제품명, 성분명 또는 업체명 입력
5. 검색 클릭
6. 결과 확인



치료목적사용면책

Therapeutic Use Exemptions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의학적 상태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함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방법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서 작성

진단서 혹은 소견서
(최근 3개월 이내),
검사기록 첨부

서류제출
(서류제출방법 3가지 기입)

TUE 유의사항

- 사용할 의약품의 금지약물여부 확인
- 금지약물 검색 서비스 확인
-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
- 상시 금지약물

※ TUE 바르게 알기!

1. TUE 신청이 의약품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아님
2. 반드시 약물사용 이전에 TUE 신청
3. TUE는 의료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에 의해 심사, 승인/불승인 처리 됨 (위원회 직원들은 승인여부에 관여하는 바가 없음)

사후TUE 신청방법

- * 응급 병원 치료 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 사후 TUE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응급실 방문 자체가 응급상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 사후 TUE 신청 또한 승인 또는 불승인 될 수 있습니다.

금지약물과 치료목적사용면책 Q&A

선수는 어떠한 약물도 사용하지 못하나요?

치료 또는 부상회복을 위해 금지약물을 사용(복용)해야 하는 경우,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사용(복용)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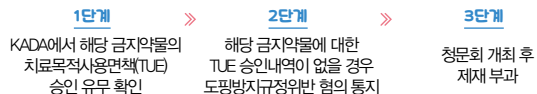
* Therapeutic Use Exemption

TUE를 신청하면 모든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TUE를 신청하면, 의사로 이루어진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에서 아래에 명시된 승인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 금지약물 및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선수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경우
- 금지약물 및 방법의 사용이 선수의 건강회복 이외의 추가적인 경기력 향상 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
- 금지약물 및 방법의 사용외에 적절한 대체 치료가 없는 경우

금지약물이 검출되면 어떻게 되나요?



- * 규정위반 혐의를 통지받은 선수는 청문의 권리를 가집니다.
- * 제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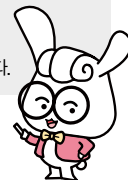
제재 사실도 공개되나요?

KADA는 누리집을 통해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선수 명단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단, 제재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감기, 고혈압, 당뇨, ADHD 등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에도 금지약물이 포함될 수 있으며, 보충제 및 건강보조제 또한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재지정보 제출

Therapeutic Use Exemptions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의학적 상태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함

소재지정보 제출



소재지정보가 뭐죠?

KADA는 경기기간 외 도핑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수의 훈련·경기일정, 거주지 등 소재지정보를 관리합니다.

RTP(검사대상명부) (Registered Testing Pool)

경기력 최상위 선수 중 국제경기연맹 또는 KADA에서 지정한 선수,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소재지정보를 제공해야 함

TP(검사대상후보명부) (Testing Pool)

KADA에서 관리하는 선수로, RTP보다 완화된 소재지정보 제출 기준이 적용됨



RTP/TP 선수의 소재지정보 제출

선수가 RTP 또는 TP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도자는 해당 선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소재지정보 제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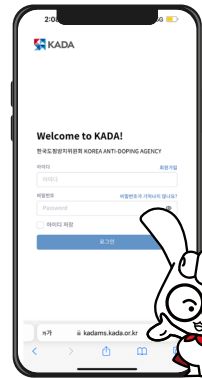


소재지정보 제출 내용 및 제출 기한

	프로구단 검사명부	프로선수 검사명부
운영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제출기간 및 횟수	비시즌 기간에 최소 1회 이상	
제출 주체	구단	선수 본인
제출 내용	팀의 소재지 정보	자신의 소재지 정보
세부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단의 합숙 장소 (예: 훈련지, 임시 숙소, 호텔 등) 훈련 일정, 그 밖의 정기적인 활동 공식적인 훈련 금지 기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수의 거주지 (예: 자택, 훈련지, 임시 숙소, 호텔 등) 훈련 일정, 그 밖의 정기적인 활동 검사가 가능한 '특정 60분'과 그 장소

* 소재지정보는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한 안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 소재지정보 입력 후, 거주지, 훈련 또는 경기일정이 변경될 경우 즉시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 * 정확하고 구체적인 소재지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 프로선수 검사명부에 포함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해당 명부에서 제외되었다는 서면통지를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명부에 남아 관리대상이 됨

온라인 도핑방지교육센터

스포츠윤리센터



온라인 도핑방지교육센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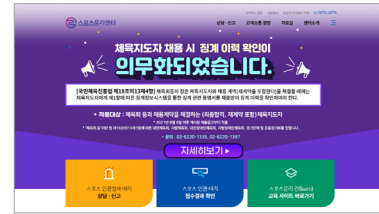
- 온라인 도핑방지교육센터에서는 대상별/주제별 도핑방지 강의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누구나 제한없이 모바일/PC에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모든 도핑방지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1** 온라인 교육센터 접속
edu.kada.or.kr
- 2** 가입 / 로그인
- 3** 수강
- 4** 교육센터 내 [마이페이지-교육 이수증] 발급 가능

스포츠윤리센터 소개



재단법인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체육인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
KOREA SPORT ETHICS CENTER

상담 및 신고 접수방법

- 절 차**
- 01 상담 및 신고
 - 02 개인정보 이용동의
 - 03 본인인증
 - 04 상담 및 신고접수
 - 05 접수완료
 - 06 담당자 확인 및 답변완료



온라인 상담·신고

오른쪽 QR접속 또는
with@k-sec.or.kr로 이메일 접수



전화 상담·신고

1670-2876 / 02-6220-1376
평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점심시간 오전 12:00~오후 01:00 / 재택시간 오후 06:00~오후 07:00



방문 및 우편

(03737)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 9층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대응팀
[방문] 평일 오전 09:30 ~ 오후 05:30
점심시간 오전 12:00~오후 01:00

* 법정의무교육 안내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6,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라 체육인 법정의무교육을 수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도자의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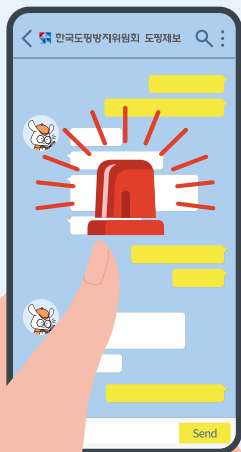
2021년 6월 9일 이후,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제4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채용 시 징계 이력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윤리센터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도핑이 의심되는
선수, 지도자, 조력자 등을 알고 있는

제보자를 찾습니다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바로 제보하세요!

제보는 이곳으로!



카톡 플러스친구

